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2023노47]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신금재(기소), 양건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향촌 외 2인

【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고합353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중위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그리고 '위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인상액'(ⓒ)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⑥,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⑥,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 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 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⑥) 그리고 '위 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 인상액'(⑥)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⑥,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⑥,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 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 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 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구체적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

법제처 16 국가법령정보센터

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법제처 17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법제처 18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⑥)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중위급여중위급여조정표와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⑥) 그리고 '위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인상액'(⑥)은 피고인들의업무상 배임행위로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하여급취득하게한 재산상이익에 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⑥,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⑥,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 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 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법제처 21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 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법제처 22 국가법령정보센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법제처 23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법제처 24 국가법령정보센터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제처 25 국가법령정보센터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

법제처 26 국가법령정보센터

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법제처 27 국가법령정보센터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⑥)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중위급여중위급여조정표와같은 수준에 해당하는인상액'(⑥) 그리고 '위각 인상액으로인한 퇴직금인상액'(⑥)은 피고인들의업무상 배임행위로인하여 피고인 2가취득하거나, 제3자인직원들로하여급취득하게한 재산상이익에 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

법제처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법제처 29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 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법제처 31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법제처 3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법제처 33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법제처 35 국가법령정보센터

3) 당심의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 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그리고 '위 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 인상액'(ⓒ)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⑥,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법제처 3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법제처 37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 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법제처 38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법제처 39 국가법령정보센터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법제처 40 국가법령정보센터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

법제처 41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법제처 42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법제처 43 국가법령정보센터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⑥)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중위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⑥) 그리고 '위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인상액'(⑥)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법제처 44 국가법령정보센터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임의로 기재하여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

법제처 45 국가법령정보센터

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

법제처 46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 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법제처 47 국가법령정보센터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

법제처 48 국가법령정보센터

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법제처 49 국가법령정보센터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피고인 1 징역 2년, 피고인 2, 피고인 3 각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이사회의 결의에는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이사회 결의는 임금 인상률, 임금 인상액 이외에도 급여 체계의 조정, 상위직 인상 배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도 인정될 수 없다.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의 직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656,053,487원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라도 인상하겠다는 이사들의 가정적 의사를 이유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감사들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금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사회에서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이다.

법제처 50 국가법령정보센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부적절한 업무집행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들의 업무가 방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2019. 8.경 (명칭 생략)농협에서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 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여 결 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였다.
-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임원으로서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이사 및 감사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관련 예산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집행이 부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처럼 허위로 설명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고, 일부 이사들로부터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다가 2019. 11.경 개최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에서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여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2019. 9. 20.경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 102명에게 급여 상승분 63,116,6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4회에 걸쳐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를 포함한 직원들로 하여금 합계 1,656,053,48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는 공감하며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3% 정도 수준까지 인상하는 것'에 동의한 점, ②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직급별로 약 5.7% 내지 10.5%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및 급여조정표

법제처 51 국가법령정보센터

와 같이 급여를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도 직원들이 2019년도 특별성과급을 포기하는 등 일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이를 수용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사들은 2022. 1. 28.경 개최된 이사회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제8차 이사회의 결의 이전으로 원상복귀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약 11.3%를 인상한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였다.

뒤이어 원심은,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 중 피고인들이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에 3% 혹은 그 이상이 되는 실제 급여 인상률을 밝히고 (명칭 생략)농협 이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결의를 하였을 경우 인상될 수 있었던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상당액은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명칭 생략)농협 직원들로 하여금 그 부분만큼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명칭 생략)농협에 그 부분만큼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명칭 생략)농협 이사들이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 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어 결국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액수 미상을 넘어 1,656,053,487원 전액에 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원들의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는 급여규정은 업무규정에 속하므로, 급여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고((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49조 제1항 제8호),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합 내부 및 외부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여규정이 정하고 있는 급여기준이 적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급여규정을 개정할 임무가 있는 점, ② 이사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의 취지에 공감하며 심의과정에서 피고인들과 문답을 거쳐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이 '2019년 기준 잔여 판매비와 관리비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종전 대비 약 3% 인상한다 '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제8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384쪽), ③ 이사들은 제11차 이사회에서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증거기록 24쪽)의 내용을 확인한 뒤, 피고인 2가 "2019년 12월 이사회에 전체 직원들의 특별성과급 지급 상정을 포기함으로써 제8차 이사회 승인 문제를 해결하자. 제8차 이사회 승인 안건을 원점으로돌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고 제안하자, 이사 모두의 동의로 피고인 2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제11차 이사회 회의록에 전원 날인한 점(증거기록 513쪽) 등을 종합하면, '제8차 이사회에서 제11차 이사회 사이에 직원들에게 지급된급여 중 5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종전 급여의 약 3%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및 '제11차 이사회 이후 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중 위 급여조정표와 같은 수준에 해당하는 인상액'(ⓑ) 그리고 '위 각 인상액으로 인한 퇴직금 인상액'(ⓒ)은 피고인들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2가 취득하거나, 제3자인 직원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 ⑥, ⓒ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직원들에게 지급된 급여 및 퇴직금 상승분 합계 1,656,053,487원에서 위 ⓐ, ⑥, ⓒ의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 거가 없다.

법제처 52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원심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명칭 생략)농협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경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지역농협으로 충남 (군명 생략)군을 관할하며, (명칭 생략)농협과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은 (군명 생략)군의 70%에 달한다.
- 피고인 1은 2019. 3. 21.경 (명칭 생략)농협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운영을 총괄하여 왔고, 피고인 2는 2019. 5. 2.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기획과·총무과·감사과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왔으며, 피고인 3은 2019. 6. 30.경부터 (명칭 생략)농협의 상임이사로서 조합 업무의 집행을 총괄하여 맡아왔다.

한편 (명칭 생략)농협 정관에 따르면 직원급여규정 등 업무규정의 제정·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이사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되고 조합장이 소집 및 의장 역할을 맡고,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한다.

- (명칭 생략)농협은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명칭 생략)농협의 급여 수준이 여전히 타 농협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직원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9.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직원급여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하여 결의를 통과시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 가) 피고인들은 2019. 8.경 충남 (주소 생략) 소재 (명칭 생략)농협 사무실에서, 총무과 직원 공소외 5 등으로 하여금 고 위직급으로 갈수록 급여 인상률을 높게 책정하여 직원들의 호봉별 기본급과 자격급 및 직책급을 2019. 9. 1.부터 일괄 인상하는 취지의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별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개정안](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을 작성하게 하여 피고인 2와 피고인 3 및 피고인 1이 순 차적으로 결재를 마치고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 또한 피고인 2는 기획과 직원 공소외 6으로 하여금 급여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취지의 PPT 자료에 '(명칭 생략)농 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작성하게 하면서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에 근접하게 산출되어 이사들의 반발이 예상되자 타 농협의 M급과 3급의 급여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인상안 적용 후 M급과 3급의 급여 수준이 타 농협 평균의 84~86% 정도로 산출되도록 허위로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직원급여규정 개정안 설명자료를 준비하였으며, 이사들에게 이사회 개최 통지를 하면서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에 관한 회의자료

법제처 53 국가법령정보센터

를 사전에 배포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8. 23.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급여를 인상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을 서면자료로 배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2는 PPT 자료를 게시하여 급여 인상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와 같이 타 농협의 급여 수치가 일부 허위로 기재된 '(명칭 생략)농협과 인근농협과의 급여(통상임금 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 급여 인상이 몇% 되는지 묻는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의 질문에 약 3% 인상이 된다는 취지로 허위의 답변을 하였으며,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급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답변을 묵인하면서 피고인 2와 피고인 1의 설명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 이에 일부 이사들이 이미 2019. 1. 1.부터 직원들의 급여를 약 10%가량 인상한 사실이 있어서 같은 해에 직원들의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취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개정된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등 구체적인 서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채 피고인들의 일방적인 이사회 진행에 밀려 직원들의 급여가 약 3% 인상될 것으로 잘못 알고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 1은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통과되었다는 취지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 나) 피고인들은 위 2019년도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던 중 일부 이사들로부터 차회 이사회에서 직급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보고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2019년도 제9차 이사회 및 제10차 이사회에서 이에 계속 불응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18.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이사 공소외 7 내지 공소외 20 및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2, 공소외 1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2019. 9. 1.부터 적용된 직급 별 평균 급여 인상률을 공개하라는 이사들의 요구에 불응하여 이사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고 이사회가 파행되어 다른 안건에 대해서도 결의가 지체되자 급여 인상률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하여 이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3은 총무과장 공소외 21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를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낮게 산정되도록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 '(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9. 11. 29. 11:00경 (명칭 생략)농협 3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파행된 2019년도 제11차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위 이사들과 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를 제시

법제처 54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였으나, 이사들로부터 이를 믿을 수 없으니 실제로 지급된 급여명세서를 보여주고 감사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2는 총무과 직원 공소외 5로 하여금 조정(인상) 전 급여액을 실지급액보다 높게 기재하여 급여 인상률이 M급 5.76%, 3급 6.61%, 4급 8.53%로 낮게 산정되도록 허위의 '급여조정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를 작성하게 한 다음 이를 이사회에 제시하고, 피고인 1은 이를 묵인하는 방식으로, 위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허위로 해명을 하고 추인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계로써 위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감사는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므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한만 있는 점, ②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사회에서 안건과 관련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는 것은 이사들의 적절한 심의 및 의결을 위한 것이므로, 그 상대방은 감사가 아닌 점, ③ 피고인들이 제8차 및 제11차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하 거나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이사들의 심의 및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감사의 업무까지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을 설시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 (1)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 온 본래의 업무수행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참조).
- (2)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6도1441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계로써 (명칭 생략)농협의 감사인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법제처 55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1)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6항은 "감사는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명칭 생략)농협 정관 제52조 제4항은 "감사는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재산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48조 제3항은 "감사와 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및 정관에 근거한 감사의 이사회 출석 및 의견진술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이사회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비교적 조기에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를 발견하여 후속절차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한다는 감사로서의 주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라 할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한다.

- (나)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제8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피해자 공소외 1은 '올해 2번의 급여 인상이 되는데, 몇 퍼센트나 급여 인상이 되는지', '앞으로 매년 3%씩 인상하는 것인지' 질의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총 금액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질의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다)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2019. 11. 18. 파행되었다가 2019. 11. 29. 11:00경 속행된 제11차 이사회에 모두 출석하였다.
-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종전 제8차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제11차 이사회(2019. 11. 29. 오전)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M급, 3급, 4급 등 3명의 직원에 대한 8월분과 9월분의 급여명세표를 해당 직원의 동의하에 뽑아오면 확실하다.
- ', '3% 인상이 됐든지, 5% 인상이 됐든지 배부해준 자료는 인상률 부분이나 금액적인 부분이나 이사님들이 자료를 믿지 못하고 있으니, 종전 요청대로 M급, 3급, 4급 3명에 대한 급여명세표를 뽑아주면 다 나오지 않냐.', '자료 공개가 정 안 되면 오후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
- '라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통상임금을 놓고 보면 직급간 평균적으로 7.7%의 인상률이 보여지는데 3%의 인상률과는 차이가 나지 않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법제처 56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가 정회되었고,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는 피고인 2로부터 급여조정표를 받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
- 같은 날 오후 속개된 이사회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은 참석자들에게 급여조정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피해자 공소외 2는 '분명히 5억 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자.'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이러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행위는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감사로서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가 업무 수행 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 (2) 피고인들은 제8차 이사회에서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되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직책급표 를 교부한 바 없다.
- 피고인들이 사전 작성 및 리허설을 거쳐 제8차 이사회에서 13분 동안 발표한 PPT 자료에는 개정 후 기본급표·자격급표 ·직책급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증거기록 411~415쪽, 3189쪽), 주된 구두 설명 내용은 임금 인상의 필요성과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급여 인상률을 약 3%로 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PPT 자료에는 타 농협의 임금액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i) 농협중앙회(자료에는 'ㅈ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1,457,400원, 3급 최대 788,100원, ii) 세종중앙농협(자료에는 'ㅅ농협'으로 표기) M급 1,952,100원, 3급 1,034,000원, iii) 동대전농협(자료에는 'ㄷ농협'으로 표기) M급 최대 731,300원, iv) 영동농협(자료에는 'ㅇ농협'으로 표기) M급 2,239,167원, 3급 1,312,000원씩 각각 실제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M급과 3급의 임금액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기재하였고, 타 농협의 4급, 5급, 6급 임금액 및 타 농협 대비 (명칭 생략)농협의 4급, 5급, 6급의 임금액 비율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 그리고 설명된 급여 인상률 약 3%는 실제 급여 인상률(평균금액 기준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 또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직원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명칭 생략)농협의 임금 수준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3) 피고인들은 2019. 11. 29. 오전 제11차 이사회에서 급여 인상률이 M급 5.7%, 3급 6.4%, 4급 8.3%, 5급 10.5%, 6급 7.9%로 허위 기재된 '2019년 급여조견표 조정 비교표'(실제 급여 인상률 M급 25.03%, 3급 16.55%, 4급 17.42%, 5급 13.09%, 6급 8.54%)를 제공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직원 급여명세서의 제공을 거부하다가,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앞서 본 바와 같은 의견을 듣고 같은 날 12:00 무렵 이사회를 정회하였다.

법제처 57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회 시 피고인들은 피고인 2, 상무 공소외 3, 과장 공소외 4의 개인 급여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구비한 뒤(증거기록 1392~1398쪽), 전산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기본급 + 자격급 + 직책급) 인 상액 및 인상률이 "피고인 2(M급) 303,600원, 5.76%, 상무 공소외 3(3급) 269,600원, 6.61%, 과장 공소외 4(4급) 323,600원, 8.53%"로 나타난 급여조정표를 제시하였으나, 급여명세서상 실제 인상액 및 인상률은 피고인 2 1,154,200원, 26.08%, 공소외 3 622,400원, 16.70%, 공소외 4 643,200원, 18.52%이었다(증거기록 265~305쪽).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제8차 이사회 결의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임금 인상액이나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위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명칭 생략)농협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에 대한 감사, 이사회에 대한 의견 진술 등에 관한 피해자 공소외 1, 공소외 2의 감사로서의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될 위험성이 초래되었으며,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이유무죄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업무상 배임죄 부분과 일죄관계에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58 국가법령정보센터